

 신안산대학교	<b>특임부총장에 관한 규정</b>	규정번호 2-3-25 제정일자 2019.03.01 개정일자 2021.08.20 책임부서/팀·계 기획처
---	---------------------	---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특임부총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특임부총장이라 함은 대학교, 연구기관,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특정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업적을 쌓은 전문가이어야 하며, 세부자격은 특정 직무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3조(위촉절차)**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임부총장을 학교법인 순효학원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.

**제4조(위촉기간)** 특임부총장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기능)** 특임부총장은 비상임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대학발전에 관한 자문 및 조언
2. 산학협력 및 취업에 관한 사항
3. 기타 총장이 위임하는 업무

**제6조(예우)** ① 특임부총장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의 각종 의식에 있어서 합당한 예우를 받는다.

② 특임부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의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위촉취소)** 특임부총장이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특임부총장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8조(소요경비 및 급여)** 특임부총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대학발전 기여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